

Q4

산불예방을 위해 산에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?

**A** 「산림보호법」 제34조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특정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,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은 화기, 인화물질, 발화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ライター, 담배, 휴대용 버너 등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. 적발시 「산림보호법」 시행령에 의해 10만 원(1차 위반)에서 20만 원(2차 이상 위반)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